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자격취득 방법

건설기술인 등급산정 기준

-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261호)
- 등급점수 = 자격점수(40점) + 학력점수(20점) + 경력점수(40점)
 - 초급(35점 이상 ~ 55점 미만), 중급(55점 이상 ~ 65점 미만), 고급(65점 이상~75점 미만), 특급(75점 이상)

자격점수 (40점)	학력점수 (20점)	경력점수 (40 점)		
		· 401일 (1점) · 19년 (31.93점)		
		· 579일 (5점) · 20년 (32.48점)		
		· 697일 (7점) · 21년 (33.01점)		
		· 2년 (7.52점) · 22년 (33.52점)		
	· 학사이상 (20점)	· 918일 (10점) · 23년 (34.00점)		
	· 역사이경 (20년)	· 3년 (11.91점) · 24년 (34.46점)		
· 기술사·건축사 (40점)	 · 전문학사3년제 (19점)	· 4년 (15.03점) · 25년 (34.90점)		
	, CEANSON (198)	· 5년 (17.45점) · 26년 (35.33점)		
· 기사·기능장 (30점)	· 전문학사2년제 (18점)	· 6년 (19.43점) · 27년 (35.74점)		
7/4/2/00 (300)		· 2,309일 (20점) · 28년 (36.13점)		
· 산업기사 (20점)	· 고졸 (15점)	· 7년 (21.10점) · 29년 (36.51점)		
	(I3G)	· 8년 (22.55점) · 30년 (36.88점)		
· 기능사 (15점)	· 비전공(이공계열) 1) (15점)	· 9년 (23.83점) · 31년 (37.24점)		
10 1 (10 1)		· 10년 (24.97점) · 32년 (37.58점)		
· 무자격 (10점)	· 국토부지정교육이수 2) (12점)	· 11년 (26.00점) · 33년 (37.91점)		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· 12년 (26.94점) · 34년 (38.24점)		
	· 기타 비전공 (10점)	· 13년 (27.81점) · 35년 (38.55점)		
		· 14년 (28.62점) · 36년 (38.86점)		
		· 15년 (29.36점) · 37년 (39.15점)		
		· 16년 (30.06점) · 38년 (39.44점)		
		· 17년 (30.72점) · 39년 (39.73점)		
		· 18년 (31.34점) · 40년 (40.00점)		

- * 무자격자(국가자격증이 없는 사람)로 비전공자인 경우는 등급산정 불가예)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
- ※ 건설기술인 등급산정 프로그램 (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/ 역량지수 계산)
 - $-\ https://homenet.kocea.or.kr:1443/home/info/engmgr/carInf_gongji_201803_01.do$
- 1) 비전공(이공계열) :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졸업 또는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가 취득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다를 경우 학력점수 15점 적용
- 2) 국토부지정교육이수 :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

유형별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취득 방법

1. (신규 취득)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

예1)	○○고등학교 기계관련학과3) 졸업하고, 배관기능사(기계분야)로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10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5점) + 자격점수(15점) + <mark>경력점수(24.97점)</mark> = 54.97점 (초급)
예2)	○○고등학교 배관용접과 졸업하고, 온수온돌기능사(건축분야)4)로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6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5점) + 자격점수(10점) + 경력점수(19.43점) = 44.43점 (초급)
예3)	○○고등학교 인문계 졸업5하고, 용접기능사(기계분야)로 기계설비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된 경력이 2.5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0점) + 자격점수(15점) + <mark>경력점수(10점)</mark> = 35점 (초급)
예4)	○○전문대학교(2년제) 전기관련학과 졸업이하고, 전기기능사(전기분야)로 기계설 비공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3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5점) + 자격점수(10점) + 경력점수(11.91점) = 36.91점 (초급)

○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경력신고 (문의처 : 1577-5445)

- 제출서류 (서식 다운 및 작성요령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경력관리안내 참조)
 - ①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)
 - ② 경력확인서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 - ③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- ④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관련 교육 수료증 (해당자에 한함)
 - ⑤ 증명사진 (3.5cm × 4.5cm) 2매
 - ⑥ 건설기술경력증발급(신규모바일·갱신·재발급) 신청서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
 - ⑦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관련 증명서 등)
 - ⑧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기술인협회 서식 제51호)
 - ⑨ 클린서약서 (기술인협회 서식)

³⁾ 기계분야 관련학과: 기계관련학과, 계측관련학과, 냉동관련학과, 용접관련학과, 배관 관련학과, 선박관련학과, 조선관련학과, 자동차관련학과, 금형관련학과, 기관관련학과, 항공관련학과, 메카트로닉스공학과, 생산자동화공학과, 시스템공학과, 기체기관공학과, 제조공학과, 공업교육학과(기계), 배관용접과, 금형공구과, 건축설비관련학과, 철도차량관련학과

⁴⁾ 국자자격이 기계분야가 아닌 경우 기능사 자격점수(15점)는 10점 적용

⁵⁾ 기계분야 관련학과가 아닌 경우 고졸 학력점수(15점)는 10점 적용

⁶⁾ 기계분야 관련학과가 아닌 경우 전문학사 2년제 학력점수(18점)는 15점 적용

2. [신규 취득]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고, 기계분야 관련학과를 이수한 사람

예5)	○○고등학교 냉동관련학과 졸업하고,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7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5점) + 자격점수(무자격 ⁷⁾ 10점) + <mark>경력점수(21.1점) = 46.1점 (초급)</mark>
예6)	○○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하고, 기계설비공사의 설계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5년인 사람
	⇒ <mark>학력점수(20점</mark>) + 자격점수(무자격 10점) + <mark>경력점수(17.45점)</mark> = 47.45점 (초급)
예7)	○○전문대학교(2년제) 건축설비학과 졸업하고, 기계설비공사업체 본사 공무부에서 사무직 경력이 3년인 사람
	⇒ <mark>학력점수(18점)</mark> + 자격점수(무자격 10점) + <mark>경력점수(11.91점)</mark> = 39.91점 (초급)

-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경력신고 (문의처 : 1577-5445)
 - 제출서류 (위의 "1"과 동일)

3.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추가 취득 방법

예8)	○○고등학교 실내건축학과 졸업하고, 실내건축산업기사(건축분야)로 기계설비 공사의 시공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4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0점) + 자격점수(10점) + <mark>경력점수(15.03점) = 35.03점 (초급)</mark>
예9)	○○전문대학교(2년제) 건축학과 졸업하고, 건축산업기사(건축분야)로 기계설비 공사의 시공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16년인 사람
	⇒ <mark>학력점수(15점) + 자격점수(10점) + 경력점수(30.06점) = 55.06점 (초급)</mark> 8)
예10)	○○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하고,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(건축분야)로 기계설비 공사의 자재산출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3년인 사람
	⇒ 학력점수(15점) + 자격점수(10점) + <mark>경력점수(11.91점)</mark> = 36.91점 (초급)

-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변경신고 (문의처 : 1577-5445)
 - 제출서류 (서식 다운 및 작성요령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경력관리안내 참조)
 - ① 경력확인서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 - ② 경력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관련 증명서 등)
 - ③ 마지막 경력변경 신고 이후 취득한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
⁷⁾ 무자격 : 국가자격증이 없는 사람

⁸⁾ 실제로 수행한 건설업무의 직무분야(전문분야)가 국가자격증 및 졸업 또는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를 경우 **초급으로 인정하고 승급은 불가**

4.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전환하는 방법

- (직무분야)건축 (전문분야)건축기계설비일 때만 (직무분야)기계 (전문분야) 공조냉동 및 설비로 1회에 한하여 전환 가능
 - ※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확인 방법 : 건설기술경력증수첩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

예11)	건축(건축기계설비) 특급 → 기계(공조냉동 및 설비) 특급				
예12)	"	고급 →	"	고급	(승급가능)
예13)	"	중급 →	"	중급	"
예14)	"	초급 →	"	초급	"

- **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변경신고** (문의처 : 1577-5445)
 - (2014.5.22일 이전에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을 취득한 사람) 제출서류
 - ·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)
 - (2014.5.23일 이후에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을 취득한 사람) 제출서류
 - · 경력확인서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
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 현황

□ 관련근거

-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^{*}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・훈련을 이수해야 함
 - * 건설기술인 : 건설관련 국가자격취득자, 건설기술관련학과 고졸 이상 학력자 등

□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현황

구 분	기본교육	전 문 교 육		
十 正	(직업윤리, 소양 등)	최초교육	계속교육	승급교육
대 상	건설기술인	건설기술인	현장에 배치된	초급·중급·고급
-II 0	한 길기를 한	[[[[[]	특급 건설기술인	건설기술인
이수시기	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하기 전	최초 설계·시공업무 수행하기 전	설계·시공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	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
교육시간	35시간 이상	좌 동	경과하기 전 좌 동	좌 동

[※]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

□ 교육기관

구 분	교육기관명	소재지	연락처	홈페이지
	건설기술교육원	인천	(032)463-4901	www.kicte.or.kr
		서울	(02) 565-0162	
		온라인	(032)463-4901	www.ekicte.or.kr
	건설기술호남교육원	광주	(062)513-0116	www.hicte.or.kr
T + 1 - 0 - 1 - 1		전북	(063)214-6600	
종합교육기관		서울	(02) 575-7123	www.con.or.kr
(기본교육 및	건설산업교육원	서울	(02) 456-6123	
전문교육)		온라인	1522-2938	newcon.or.kr
,	경복대학교	경기	(031)539-5400	www.cetc.or.kr
	스마트건설교육원	서울	(02)816-1311	www.isce.or.kr
	영남건설기술교육원	경북	1544-7660	www.cte.or.kr
		부산		
	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	충북	(043)879-2424	www.kscfcac.co.kr
전문교육기관	국민재난방지협회	부산	(051)517-6668	www.pdpaceplus.kr
	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(교육원)	서울	(02) 420-0106	www.kspeaed.com
(설계·시공)	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	경기	(031)756-0351	www.kpeaea.or.kr
, , , , , ,	한국능력개발원	광주	(062)529-3800	www.honamct.or.kr

□ 교육·훈련 미이수시 제재현황

- 건설기술인이 교육·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수한 경우 : 과태료 50만원
- 사용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인의 교육·훈련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: 과태료 50만원